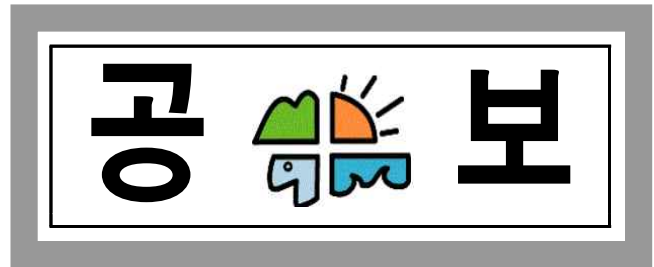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404호 2022년 8월 12일(금)

조 례

- 속초시 약취방지 및 저감 조례 2

고 시

- 속초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설악2유원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7

공 고

-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10
○ 하수처리장 부지 점·사용허가 공고 11

속초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8월 1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956호

속초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와 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자문 및 심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

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사업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지역, 악취발생 사업장 밀집지역 등 악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추진계획) 시장은 체계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시책 추진을 위해 속초시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적발 사업장, 추진계획 및 추진성과 등에 관련된 정보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1. 추진계획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3.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지정 건의
4.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민관협의회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악취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악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원 1명
2. 악취 관련 전문가
3. 악취발생지역 주민대표
4. 악취발생지역 사업장 또는 시설 관계자

③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간사는 악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민관협의회 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 및 과반수 위원들의 요구에 의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하였거나 악취문제가 해소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隣接)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 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 ⑤ (생략)

⑥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 ⑧ (생략)

제7조(배출허용기준) ① (생략)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대도

시”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악취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시·도에 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속초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설악2유원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자(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속초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설악2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변경)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12일
속 초 시 장

□ 사업시행자 지정(국토계획법 제86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705-8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속초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설악2유원지)
 - 명칭: 속초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설악2유원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사업 규모	비고
당초	유원지 (설악2유원지)	휴양시설 (C-12/생활형숙박시설/ 바닥면적9,800㎡/ 연면적49,500㎡)	807,492㎡	32,786㎡	건축면적5,259.9314㎡/ 연면적65,602.5304㎡ ※용적률산정연면적: 39,391.6062㎡
변경					건축면적6,866.0804㎡/ 연면적76,045.5630㎡ ※용적률산정연면적: 49,436.5772㎡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당초) 아시아신탁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일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 변경)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일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인가의 신청기일: 2022. 08. 02.(접수일)

□ 실시계획인가(국토계획법 제88조)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705-8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속초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설악2유원지)
 - 명칭: 속초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설악2유원지)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정규모	금회사업 규모	비고
당초	유원지 (설악2유원지)	휴양시설 (C-12/생활형숙박시설/ 바닥면적9,800㎡/ 연면적49,500㎡)	807,492㎡	32,786㎡	건축면적5,259.9314㎡/ 연면적65,602.5304㎡ ※용적률산정연면적: 39,391.6062㎡
변경					건축면적6,866.0804㎡/ 연면적76,045.5630㎡ ※용적률산정연면적: 49,436.5772㎡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당초) 아시아신탁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일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 변경) 신한자산신탁주식회사 대표이사 배일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2. 04. 29. ~ 2025. 04. 29.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붙임)

■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소유자		비 고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소	
설악동	705-81	잡	33,058	32,786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	

위치도

위 치

속초시 설악동 705-81번지 일원



토지수용재결서 정보 공시송달 공고

속초시와 영랑공원개발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속초시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2. 06. 30일자로 재결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 하고자 하였으나,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재결서 정본의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08월 09일

속 초 시 장

1. 사업의 명칭 : 속초시 영랑근린공원 민간특례조성사업
2. 사업의 위치 : 속초시 금호동 산278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속초시장, 영랑공원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재현
4. 공고내용 : 재결서 정보 송달 (재결일 : 2022.06.30.)
5. 공고기간 : 2022.08.09 ~ 2022.08.22.
6. 재결서정보 수령장소 : 속초시청 공원녹지과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 033-639-2803)
7.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소재지	지목	지분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송달주소	비고
1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617-27	전	1/1	83	(망) 신부웅의 상속인	강원도 속초시 만천7길 30	

8. 기타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하수처리장 부지 점·사용허가 공고

하수도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처리장 부지 점·사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9일

속 초 시 장

1. 사 업 명 : 해양심층수 사업에 따른 하수처리장 부지 점·사용
2. 점·사용자 : 속초시 동해대로 3930번길 74-24
(주)글로벌심층수 대표이사 도석안
3. 점·사용 목적 : 해양수산물 개발사업 수산물보세장치장 운영
4. 점·사용 장소 : 속초시 대포동 542번지
5. 점·사용 면적 : 11,948m²
6. 점·사용 기간 : 2022. 9. 17 ~ 2023. 9. 16 (1년)